

해외건설 현장 사고 통보 가이드라인

1. 근거 법령

-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

※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시 해외건설촉진법 제41조에 의해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

2. 통보 상황

- 근로자(현지인 및 제3국인 포함)의 사망, 납치, 실종
- 다음과 같은 근로자(현지인 및 제3국인 포함)의 부상(또는 질병)
 -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
 -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
 - 치명적인 전염성 질병자가 1명 이상 발생
- 시공중인 시설물의 50% 이상이 망실되거나, 피해금액이 1천만불 이상인 대물사고

3. 통보 절차

- ① 1단계: 즉시 통보(사건 사고 인지 즉시)

- 해외건설협회 국가 담당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즉시 통보
- 필요 시, 사고 현장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도 통보

- ② 2단계: 법정 상황통보(온라인 신고)

- 사고 발생 15일 이내에 온라인 신고 사이트에 사고 통보 입력
 - ☞ 해외건설e정보시스템(<https://yes.icak.or.kr>)→해외공사상황통보→제반사고통보
-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사고 통보 작성
 - 사고 일시 및 장소
 - 관련 공사명 및 관련자
 - 사고 내용(피해상황 포함)
 - 사고 원인

4. 관련 문의

- 1단계 통보: 협회 아시아미주실(02-3406-1076), 아중동유럽실(02-3406-1087)
- 2단계 통보: 협회 회원지원실(02-3406-1134)